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9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김성원·구자근·김선교
이인선·정동만·고동진
김용태·박충권·이현승
박성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공직선거법」은 2021년 12월 개정으로 지방선거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18세 이상의 미성년자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광명문화재단, 과천문화재단, 속초문화재단, 고양시 청소년재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 출자·출연기관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원 중 ‘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.’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18세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당선될 경우 해당 출자·출연기관의 이사장을 당연히 겸하게 되는 실정임.

그러나 현행 「지방출자출연법」은 미성년자를 일률적으로 임원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18세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출자·출연기관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는 법적 모순이 발생함.

이는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도 배치되며 법령 간 불일치로 인해 지방 출자·출연기관의 임원 선임 및 운영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.

이에 해당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(안 제10조제1항제1호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18세 미만인 사람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u>1. 미성년자</u> 2. ~ 4. (생략) ② (생략)	제10조(임원의 결격사유 등) ① ----- ----- -----. <u>1. 18세 미만인 사람</u> 2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